

[무배당 다이렉트늘함께있어좋은보험1104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장기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다이렉트늘함께있어좋은보험1104
3. 보험의 목적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연령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연령
보통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	100세 만기	전기납	월납 연납	20세 ~ 60세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		20년납		
	신주말교통상해사망		10년납		
	암진단	80세 만기	전기납 20년납 10년납		
	뇌출혈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남성7대질병수술				
	여성6대질병수술				
	부인과질병수술				
	질병사망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상해장기입원				
	질병장기입원				
골절화상수술					
(갱신형)실손의료비	3년 만기 ^{주1)}	전기납			
제 도 성 특별약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 해부담보	-	-	-	-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정부위·질병부담보				

주1) 갱신형특별약관(실손의료비)은 보통약관의 만기까지 매3년마다 자동갱신하며, 잔여 갱신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1-2년 만기로 갱신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 없음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1) 보험료자동납입 할인

보험료자동납입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보험료에 대하여 1%의 할인율을 적용함

(2) 가족계약 할인

① 계약자가 가족(본인포함)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증권 외에 추가되는 가족계약에 대하여 한

증권당 각 1%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함. (단, 보험료자동이체납입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함)

② 가족의 범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7. 갱신행특별약관 (실손의료비)에 관한 사항

(1) 갱신보험료의 계산

상기(갱신행) 특별약관의 “보험료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제도 또는 보험료로 적용함.

※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행)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위험률을 재 산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사용하며, 갱신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해당계약의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3년 동안 적용함

(2) 갱신보험료의 안내

회사는 갱신행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보험료를 서면으로 통보함

(3) 갱신보험료의 대체납입 및 추가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부분보험료가 없는 상품으로 책임준비금에서의 대체납입이 없으며, 갱신보험료 변경 시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함

(4) 실손의료비 가입에 관한 사항

종합형의료비 가입자는 상해형의료비 및 질병형의료비를 동시가입 불가함

8. 질병사망 특별약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에 대한 보장과 관련된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운용함

(1) 보험기간은 80세 만기 이내로 함

(2)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3)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함.

9. 특정부위-질병 부담보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질병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10. 약관 적용 및 보험요율 변경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상품은 표준약관의 변경내용을 2011. 4. 1 신규계약부터 반영함.

- (2) 단, 보험요율변경에 관한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2011. 6. 1 신규계약부터 적용함.
- FY2011 참조위험률에 따른 보험요율 변경
 - 표준약관 변경시행에 따른 보험요율 변경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하지 않음.

- 기타 계약소멸 및 보장내용과 관련하여 보험요율 변경

11. 기타

- (1)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짐.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2)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 (3) 다음의 특별약관을 가입할 경우에는 각 담보묶음 내에 있는 담보를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금액도 동일하게 설계하여야함.

담보묶음	특별약관
성인병진단	암진단, 뇌출혈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질병사망 및 질병고도후유장해	질병사망, 질병80%이상후유장해
여성특정질병수술	여성6대질병수술, 부인과질병수술